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38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김예지·최수진·박덕흠

서천호 · 김선교 · 김소희

정성국 · 최형두 · 정준호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게재·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나아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 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년"을 "10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제70조(벌칙) 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u>	<u>5년</u> <u>5천만</u>
<u>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원</u>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	②
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u>1</u>
<u>년</u>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0년
자격정지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u>1</u> 억원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